



# 작업 전 안전점검 고소작업대(시저형)

설비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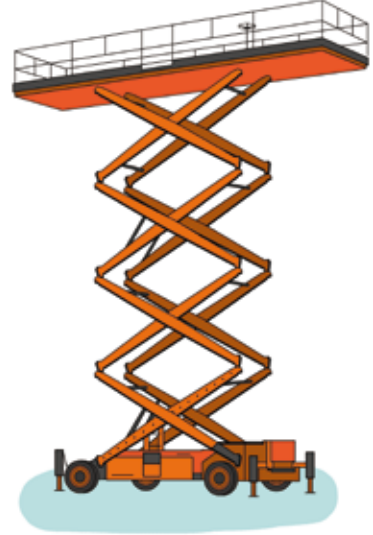
작업 전 안전점검  
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
2015 - 교육미디어 - 721

고소작업대란 작업대, 연장구조물(지브),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. 시저형은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·가위형 구조물을 상승시켜 천장배관 보수, 전등교체 등의 고소작업을 하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.

## 주요 유해·위험 요인으로는,

- 아웃트리거 설치불량 등으로 넘어짐
-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작업자 떨어짐
- 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한 끼임 위험 등이 있다.



## ✓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### 점검항목

- 작업장소는 지반침하 등 설비의 전도위험이 없는 곳인가?
- 작업대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끼임 방지를 위한 『과상승 방지장치』 설치 후 작업하는가?
-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작레버 잠금장치(또는 발스위치)는 정상 작동되는가?
-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?(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)
-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작성하고 있는가?
-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확인하고 있는가?
- 정격하중 초과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가?
- 유압계통 이상시 작업대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지밸브는 설치되어 있는가?
-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(약3°) 이상의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작동이 제한되는가?
-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는가?
- 동력 차단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?
- 조작레버의 동작방향 표시 및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(또는 발스위치)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가?
- 시저 암 점검시 사용되는 안전블록은 설치되어 있는가?
- 작업대 작동을 알릴 수 있는 가청경고장치(경보장치)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
- 작업대의 안전난간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?

### 점검결과

### 조치사항

※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(아차사고, 위험성평가 등)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.



#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안전

## 주요 발생형태별 안전대책

넘어짐 위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과부하방지장치, 과상승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(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금지)</li> <li>2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바닥 경사 및 평탄상태 확인</li> <li>3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·사용(발판 수평유지)</li> </ol>
작업대 떨어짐 위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작업대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유지</li> <li>2 용접부 균열발생 여부 및 볼트 체결상태 점검</li> </ol>
떨어짐 위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작업방향 안전간간 해체 금지</li> <li>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사용 철저히</li> </ol> 
끼임 위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작업환경에 맞게 과상승방지장치 작동높이 조정 및 임의해제 금지</li> <li>2 작업위치(높이) 도달 후 비상정지장치 작동</li> </ol>

## 고소작업대에 사용되는 주요 방호장치(시저형)



<p>작업 전 <b>안전점검</b> 당신의 <b>생명</b>을 지킵니다</p>	<p>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/ 실천문화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사 업 주</b>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</li> <li>• <b>근 로 자</b>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, 보고 및 대응</li> <li>• <b>관리감독자</b>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</li> </ul>	<p><b>기억하세요!</b>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보건표지 부착(위험장소, 설비 등)</li> <li>2. 안전보건교육 실시(위험요인, 안전작업방법 인지)</li> <li>3. 안전작업절차 지키기(절차 제정, 준수)</li> <li>4. 보호구 지급·착용(작업에 적합한 보호구)</li> </ol>
---	---	---